

대전지방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9가단117191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

피고주식회사 A

변론 종결2019. 10. 31.

판결 선고2019. 11. 2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2,252,959원과 그 중 199,620,551원에 대하여 2019. 5. 31.부터 2019. 6. 2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판사김평호

별지